

# 국선번호에 관한 예규(재형 2003-10) 일부개정예규안

## 1. 개정이유

- 일반국선번호인 보수 지급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
- 회계관계공무원이 일반국선번호인 보수 지급기한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원행정처에 지급 지연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

## 2. 주요내용

- 보수 지급기한의 기산점인 국선번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송부받은 해당 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도록 함(안 제17조 제2항)
- 회계관계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번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등을 입금하도록 함(안 제17조 제3항)
- 회계관계공무원이 국선번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수 등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지연 내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17조 제4항)

## 3. 국선번호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#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국선번호에 관한 예규(재형 2003-10) 일부개정예규안

국선번호에 관한 예규(재형 2003-10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회계관계공무원은” 을 “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(송부)받은 “국선번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” 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고,” 로 하고, “입력하고” 를 “입력하며” 로 한다.

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의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“국선번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”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한다.

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항의 기간 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번호, 국선번호인의 성명, 판결선고일 및 지급의뢰일, 미지급한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의 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<p>③ (생 략)</p>	<p><u>당의 변상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번호, 국선번호인의 성명, 판결선고일 및 지급의뢰일, 미지급한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의 금액,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581